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90 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정성국·주진우·강선영

김대식 · 김용태 · 이헌승

조경태 · 조정훈 · 곽규택

백종헌 • 박수영 • 서지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(이하 "취업자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음.

하지만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일정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, 특히 학교에서 인력 채용 시 동 업무를 교원이담당함에 따라 행정업무과다로 인해 본질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됨은 물론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실정임.

한편, 최근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의 경력을 곧바로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으며, 현재 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는 정비되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임.

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,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 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 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.
- 1. 제1항제8호의 유치원
- 2.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교육기관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	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
제한 등) ① ~ ⑥ (생 략)	제한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
	<u>♥</u>)
<u><신 설></u>	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
	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
	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
	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
	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할
	수 있다.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
	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
	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.
	1. 제1항제8호의 유치원
	2.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교육
	<u>기관</u>
<u>⑦</u> (생 략)	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